

의안번호	제 868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월 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종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8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발 의 자 :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원갑희, 이상정, 이상식
이상욱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수행사업을 조례상에 명확히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및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청년과 관련된 사업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함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1. 9. 16.~ 2021. 9. 28.(12일간)
-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중소기업 육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지원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10.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11. 청년시설의 운영

제8조제3항 중 “진흥원 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u>규정한 기업을 말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 <u>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u>--- ---</p> <p>2. “<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u>따른 자를 말한다.</u></p> <p>3. “<u>청년</u>”이란 「<u>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u>」 제3조에 <u>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사업) 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2. (생략)</p> <p>3. <u>일자리 지원 업무</u></p> <p>4. (생략)</p> <p>5. <u>중소기업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u></p> <p>6. ~ 8. (생략)</p>	<p>제3조(사업)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u></p> <p>4. (현행과 같음)</p> <p>5. <u>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 -----</p> <p>6.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9.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u>중소기업 육성</u>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 설></p> <p><신 설></p> <p>10. (생 략)</p> <p>제8조(보고 및 검사) ① ~ ② (생 략)</p> <p>③ 도지사와 <u>진흥원</u>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9. ----- ----- <u>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지원육성</u>-----</p> <p>10. <u>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u></p> <p>11. <u>청년시설의 운영</u></p> <p>12.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8조(보고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진흥원장</u>----- ----- ----- -----.</p> <p>제9조(시행규칙) ----- <u>필요한</u>----- -----.</p>

관련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지원 사업관련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제3조(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126,092백만원(국비 56,569, 도비 69,523)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45%, 도비 55%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126,092	14,330	27,901	27,928	27,953	27,980
국비	56,569	6,233	12,574	12,581	12,587	12,594
도비	69,523	8,097	15,327	15,347	15,366	15,386
소상공인 지원	2,071	267	442	448	454	460
국비	0	0	0	0	0	0
도비	2,071	267	442	448	454	460
청년 지원	124,021	14,063	27,459	27,480	27,499	27,520
국비	56,569	6,233	12,574	12,581	12,587	12,594
도비	67,452	7,830	14,885	14,899	14,912	14,926